

의안번호	2219857
의 퇴 인	문금주 의원
회 답 일	2026.7.27.
추계번호	26E3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8조제1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현행		개정안		
		기부금액	공제율	기부금액	공제율	
		10만원 이하	100/110	2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0만원	20만원 초과	20만원	
		20만원 이하	초과분 40%	30만원 이하	초과분 40%	
		20만원 초과	20만원	30만원 초과	30만원	
		2천만원 이하	초과분 15%*	2천만원 이하	초과분 15%*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30%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6조제1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전액 세액공제(~10만원) 및 40%의 공제율(10~20만원)이 적용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준 금액을 10만원씩 인상하려는 것으로,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현행)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10~20만원 40% / 20~2,000만원 15%
 - (개정안) ~20만원 전액 세액공제 / 20~30만원 40% / 30~2,000만원 15%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개별 납세자의 기부 증가액 등에 대한 정

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객관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전액 공제 및 40% 공제율 적용 구간을 확대할 경우 기부 가격(giving price)이 하락함에 따라 기부자가 더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 전체 기부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나, 제도변화에 따라 기부금을 더 많이 내는 기부자의 수 및 증가한 기부금액을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참고로, 2025년 고향사랑 기부금액은 약 1,515억원이며, 총 기부 건수 139만건의 92.3%(129만건)가 전액 세액공제 한도액인 10만원을 기부하고 있음
 - 2024년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액은 약 879억원이며, 총 기부건수(77.4만건)의 91.7%(70.9만건)가 전액 세액공제 한도액인 10만원을 기부함

[표 4]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 2024~2025년

(단위: 건, 백만원)

기부금액 구간	2024		202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만원 미만	9,041	28	16,093	30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40,979	1,777	68,161	2,749
10만원	709,217	70,922	1,285,289	128,529
10만원 초과 20만원 미만	2,494	313	4,785	601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745	755	7,243	1,458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003	1,240	4,240	1,726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709	5,666	4,555	6,742
500만원	1,444	7,220	1,156	5,780
500만원 초과 1000만원 미만	—	—	39	258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	225	2,304
2,000만원	—	—	64	1,280
계	773,632	87,921	1,391,850	151,456

자료: 행정안전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